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

□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창수 위원장님,

그리고 선배, 동료 위원님 여러분!

자유한국당 이명희 의원 입니다.

「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□ 본 개정안의 제안 이유는,

본 조례 중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용어와 잘못된 인용조항을 바로 잡고, 안정적인 공공급식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급식단체를 포함하는 등 공청회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□ 주요 내용은

공공급식관련 용어 및 정의가 명확하도록 수정하고, 다양한 급식 관련 단체를 포함하며, 인용조항의 오류를 수정하는 것입니다. 또한 조·항·목의 순서를 바로잡고, 구청장의 권한 침해 부분과 불필요한 약어를 삭제하며, 위원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위원장 선출 방법 및 분과위원회 운영방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.

- □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!
 - 본 개정안은

안정적인 공공급식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급식단체를 포함하는 등 공청회 의견을 반영하고, 본 조례 중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용어와 잘못된 인용조항을 바로 잡기 위하여 제안하였다는 점을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감사합니다.